하늘을 나는 자동차 관련

법제도

주의】이 글은 가상의 비행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법률 자동 생성 예시입니다.

목차

- 1. 비행 자동차 고도 제한법
- 2. 비행 자동차 속도 제한법
- 3. 비행차 비행코스 및 경로법
- 4. 비행체 이착륙 구역법
- 5. 비행차 피난수단법
- 6. 비행체 통신 시스템법
- 7. 비행체 자동 비행 및 AI 사용법
- 8. 비행자동차 운전자격 및 허가법
- 9. 비행차 소음 규제법
- 10. 비행자동차 환경영향규제법

비행 자동차 고도 제한법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비행자동차의 비행안전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행자동차의 비행 고도 제한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"비행자동차"라 함은 지상 및 공중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차량을 말한다.

제3조(일반적인 비행고도 제한)

- 1. 도심지에서 비행차가 비행하는 경우 기본 고도는 지상에서 150m에서 300m로 한다.
- 2. 도시 외의 지역에서 비행차가 비행하는 경우 기본 고도는 지상에서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한다.
- 3. 특정 지역이나 시설 상공에서 비행을 금지하거나 특정 고도를 지정할 수 있다.

제4조 (특례 비행 고도)

- 1. 긴급차량, 공공기관 차량 및 관련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3조의 제한을 초과하는 고도에서 비행이 허용된다.
- 2. 제1항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.

제5조(고도계측장비 탑재 의무)

- 1. 비행체는 정확한 비행 고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.
- 2. 제1항의 장비의 사양 및 기능은 관계기관이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고도제한 위반 시 처벌)

- 1. 이 법을 위반하여 고도제한을 초과하여 비행한 자는 1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2. 중대한 사고를 유발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벌금 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7조(감독 및 지도)

국가는 비행차 비행 고도 제한의 이행 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 또는 명령을 내린다.

제8조(법 시행일)

비행 자동차 속도 제한법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비행자동차의 비행 안전 및 일반 대중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비행자동차의 비행 속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"비행자동차"라 함은 지상 및 공중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차량을 말한다.

제3조(일반적 속도제한)

- 1. 도심에서 비행 자동차가 비행하는 경우 최대 속도는 시속 150km로 한다.
- 2. 도시 외의 지역에서 비행 자동차가 비행하는 경우 최대 속도는 시속 250km로 한다.
- 3. 특정 지역이나 시설 상공 또는 특정 비행 코스에서는 별도의 속도 제한이 설정될 수 있다.

제4조 (특례 속도 제한)

- 1. 긴급차량, 공공기관 차량 및 관련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3조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
- 2. 제1항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.

제5조(속도 측정 장치 탑재 의무)

- 1. 비행체는 정확한 비행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장치를 탑재하도록 의무화한다.
- 2. 제1항의 장비의 사양 및 기능은 관계기관이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속도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)

- 1. 이 법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비행한 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2. 중대한 사고를 유발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벌금 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7조(감독 및 지도)

국가는 비행자동차의 속도제한 이행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 또는 명령을 하여야한다. 제8조(법 시행일)

비행차 비행코스 및 경로법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비행자동차의 비행 안전과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행자동차의 비행 코스 및 경로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"비행자동차"란 지상 및 공중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차량을 말한다. 또한 "비행코스"란 비행자동차가 비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경로를 말한다.

제3조 (비행코스 및 노선 설정)

- 1. 비행차량의 비행 코스와 경로는 교통관리기관이 정한다.
- 2. 비행 코스 및 경로는 교통량, 기상 조건, 지리적 특성, 도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.

제4조 (비행코스 및 노선 준수)

비행체는 지정된 비행코스 및 경로를 준수해야하며, 이를 벗어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 단, 긴급 상황 등 일정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한다.

제5조(특례 비행 코스 및 노선)

- 1. 긴급 차량, 공공기관 차량 및 관련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비행 코스와 경로를 벗어나는 것이 허용된다.
- 2. 제1항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.

제6조 (비행코스 및 경로위반 시 처벌)

- 1. 이 법을 위반하여 비행코스나 경로를 이탈한 자는 1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2. 중대한 사고를 유발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벌금 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7조(감독 및 지도)

국가는 비행차량의 비행코스 및 경로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, 필요한 경우 지도 또는 명령을 내린다.

제8조(법 시행일)

비행체 이착륙 구역법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비행자동차의 비행안전 및 일반 공중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행자동차의 이착륙에 관한 구역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"비행자동차"라 함은 지상 및 공중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차량을 말한다. 또한 "이착륙구역" 이라 함은 비행자동차가 이착륙을 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
제3조 (이착륙 구역 설정)

- 1. 이착륙 구역은 교통 관리 기관에 의해 정해진다.
- 2. 이착륙 구역은 지리적 특성, 인구밀도, 주변 건축물 및 시설,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.

제4조 (이착륙장 사용)

비행체는 지정된 이착륙 구역 외의 이착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 단, 긴급 상황 등 일정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한다.

제5조(특례 이착륙 구역)

- 1. 긴급차량, 공공기관 차량 및 관련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이착륙 구역 밖에 서도 이착륙이 허용된다.
- 2. 제1항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.

제6조 (이착륙 구역 위반 시 처벌)

- 1. 이 법을 위반하여 이착륙 구역 밖에서 이륙 또는 착륙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2. 중대한 사고를 유발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벌금 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7조(감독 및 지도)

국가는 비행차 이착륙 구역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 또는 명령을 내릴수있다.

제8조(법 시행일)

비행차 피난수단법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비행자동차의 비행 중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대한대피수단을 규정함으로써 탑승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본 법에서 "비행차"란 지상 및 공중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차량을 말한다. 또한 "피난수단"이란 비행 자동차가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장비를 말한다.

제3조 (피난 수단의 설정)

- 1. 비행 차량은 탑승자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피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.
- 2. 피난 수단은 비행차 설계 및 운용에 있어 필수 요건이며, 이에 부합하지 않는 비행차의 제조, 판매, 운용을 금지한다.

제4조(피난 수단의 세부 사항)

- 1. 피난수단에는 적어도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:
 - 1. 비행 차량에서 비상 탈출 시스템
 - 2. 비상시 자동 하강 시스템
 - 3. 비상 연락 시스템
- 2. 피난 수단의 구체적인 요건은 교통 관리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.

제5조 (승무원 교육)

비행차 운전자는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훈련을 받고 정기적으로 그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.

제6조(피난수단 위반에 대한 처벌)

- 1. 이 법을 위반하여 적절한 피난 수단을 갖추지 않은 비행기를 운행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2. 중대한 사고를 유발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벌금 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7조(감독 및 지도)

국가는 비행차량의 피난수단 준수여부를감독하고, 필요한 경우 지도 또는 명령을 하여야한다. 제8조(법 시행일)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.

비행체 통신 시스템법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비행자동차의 적절한 운영과 안전한 비행을 보장하기 위해 비행자동차의 통신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"비행체"라 함은 지상 및 공중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차량을 말한다. 또한 "통신시스템"이라 함은 비행체가 다른 비행체, 지상시설 및 항공교통관제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.

제3조 (통신 시스템 설정)

- 1. 비행체는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한 통신 시스템을 갖추어야한다.
- 2. 통신시스템은 비행차 설계 및 운용에 있어 필수 요건이며, 이에 부합하지 않는 비행차의 제조, 판매, 운용을 금지한다.

제4조 (통신 시스템 세부 사항)

- 1. 통신시스템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:
 - 1. 다른 비행차량 및 항공교통관제와의 통신 능력.
 - 2. 비상 신호 전송 장치
 - 3. 자동 항해 정보 전송 장치
- 2. 통신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교통 관리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.

제5조 (운전자 교육)

비행 차량 운전자는 통신 시스템의 적절한 작동과 통신 관련 프로토콜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정기적으로 그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.

제6조 (통신시스템 위반에 대한 처벌)

- 1. 이 법을 위반하여 적절한 통신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비행체를 운행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2. 중대한 사고를 유발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벌금 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7조(감독 및 지도)

국가는 비행차 통신시스템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 또는 명령을 내릴수있다.

제8조(법 시행일)

비행체 자동 비행 및 AI 사용법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비행 자동차의 자동 비행과 AI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,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"비행자동차"란 지상 및 공중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차량을 말한다. "자동비행"이라 함은 인간의 직접적인 조작 없이 비행체가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. "AI"라 함은 자율적으로 학습, 추론, 판단을 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.

제3조 (자동비행 및 AI 사용)

- 1. 비행 자동차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자동 비행 시스템과 AI를 사용할 수 있다.
- 2. 자동비행시스템과 AI는 비행차 설계 및 운영의 기본 요건이며, 이에 부합하지 않는 비행차의 제조, 판매, 운영을 금지한다.

제4조 (자동비행 및 **AI의** 세부 사항)

- 1. 자동비행시스템과 AI는 최소한 다음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:
 - 1. 고도, 속도, 방향 자동 제어 능력
 - 2. 충돌 방지 기능
 - 3. 비상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능력
- 2. 자동 비행 시스템과 AI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교통 관리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.

제5조 (운전자 교육)

비행 차량 운전자는 자동 비행 시스템과 AI 작동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정기적으로 그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.

제6조 (자동비행 및 AI 위반 시 처벌)

- 1. 이 법을 위반하여 적절한 자동비행시스템 및 AI를 갖추지않은 비행체를 운용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2. 중대한 사고를 유발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벌금 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7조(감독 및 지도)

국가는 비행차량의 자동비행 및 AI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 또는 명령을 내릴수있다.

제8조(법 시행일)

비행자동차 운전자격 및 허가법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비행자동차의 운전 자격 및 허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

(정의)

본 법에서 "비행자동차"란 지상 및 공중을 이동하는 차량을 말한다. '비행자동차 운전자격'은 비행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자격을 말한다.

제3조 (비행차 운전 자격)

비행자동차 운전자격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발급한 제4조 비행자동

차 운전자격 취득 요건)

비행 자동차 운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
- 1. 적절한 신체적, 정신적 건강 상태여야 한다.
- 2. 교통관리기관이 정한 비행자동차 운전 자격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.

제5조 (비행자동차 운전자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)

비행자동차 운전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건강상태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수료가 필요

하다.제6조(교육 및 훈련 장소)

비행자동차 운전자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교통관리기관이 인정한 시설에서 실시한다.제7조(비행자동차 운전자격 위반 시 벌칙)

- 1. 이 법을 위반하여 적절한 비행자동차 운전 자격이 없는 자가 비행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2. 중대한 사고를 유발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벌금 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8조(감독 및 지도)

국가는 비행자동차의 운전자격 취득 및 준수여부를 감독하고, 필요한 경우 지도 또는 명령을 내린다.

제9조(법 시행일)

비행차 소음 규제법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비행자동차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행자동차 운행 시 소음 규제 기준을 정하고 있다.

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"비행자동차"라 함은 지상 및 공중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차량을 말한다. 또한 "소음"이란 비행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소리를 말한다.

제3조(소음 규제)

- 1. 비행자동차 제조사는 비행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교통관리기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.
- 2. 비행 차량 운전자는 특히 야간이나 주택가를 지날때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작을 해야 한다.

제4조(소음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)

- 1. 이 법을 위반하여 규정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비행체를 제조 또는 운행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2.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벌금 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5조(감독 및 지도)

국가는 비행차 소음 규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 또는 명령을 내릴수있다.

제6조(법 시행일)

비행자동차 환경영향규제법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비행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괜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비행차의 환경 영향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정하고 있다.

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"비행자동차"란 지상 및 공중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차량을 말한다. 또한 '환경영향'이란 비행자동차의 제조, 운용,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말한다.

제3조(환경영향 규제)

- 1. 비행 차량 제조업체는 비행 차량이 환경 영향을 관리하고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.
- 2. 비행차 운전자는 특히 자연보호구역이나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을 때 적절한 운행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.

제4조(환경영향규제 위반 시 처벌)

- 1. 이 법을 위반하여 규정 이상의 환경영향을 미치는 비행체를 제조 또는 운행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2.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벌금 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5조(감독 및 지도)

국가는 비행차량의 환경영향 규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 또는 명령을 내릴수있다.

제6조(법 시행일)